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08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 강준현·홍정민·김민석

양정숙 • 이은주 • 신정훈

아줌(비) • 이수진 • 이해식

홍성국 · 이병훈 · 김진애

윤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남동·연수구, 대전광역시 동·중·서·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수원·과천·안양·하남·의왕·군포·광명·구리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경기도 용인시수지·기흥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시·군·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여,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를 "투기과열지구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제) ①
시 ·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	
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u>투기과열지구의 지</u>	<u>투기과열지구는 읍·면</u>
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동(행정동을 말한다)의 지역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u>단위로 지정한다</u>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